2022-10-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9. 17. 선고 2021고단1465 판결 강제추행,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건 2021고단1465 강제추행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(통신매체이용음

란)

피고인 A

검사 김효준(기소), 김민호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류승언(국선)

판결선고 2021. 9. 17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1. 강제추행

피고인은 2021. 2. 10. 18: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(여, 75세)가 운영하는 미 용실에서, 다른 손님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, 그곳 의자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더듬어 만지고, 이에 피해자가 '이게 뭐하는 짓이냐. 하지마라.'와 같은 말을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.

2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가. 2021. 2. 11. 범행

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피고인은 2021. 2. 11. 16:5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"저는 누님하고 방에서 연애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. 하고 싶어요. 키스도 하고 보지도 빨고 가래침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"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나. 2021. 2. 17. 범행

2022-10-07

피고인은 2021. 2. 17. 13: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'카카오톡'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3개,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링크된 URL 주소 1개를 메시지로 보내고, 같은 날 15:35경 "사장 남하고 가게 방에서 연애 한 번 하고 싶어요. 키스도 하고 보지도 실컷 빨고 싶어요."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- 1. CD
- 1. 캡처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의 점),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(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), 각 징역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(위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)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, 제4항

1. 취업제한명령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

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,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

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,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,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, 그로 인해 달성할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,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·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

2022-10-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, 제49조 제1항, 아동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,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 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.

양형의 이유

- 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: 징역 1월~14년
- 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- 가. 제1범죄(강제추행)

[유형의 결정] 성범죄 > 01. 일반적 기준 > 나.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 > [제1유형] 일반강제추행 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처벌불원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감경영역, 징역 1월~1년

나. 제2범죄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

[유형의 결정] 디지털성범죄 > 05. 통신매체이용음란 > 통신매체이용음란

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처벌불원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감경영역, 징역 1월~6월

다. 제3범죄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

[유형의 결정] 디지털성범죄 > 05. 통신매체이용음란 > 통신매체이용음란

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처벌불원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감경영역, 징역 1월~6월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: 징역 1월~1년5월(제1범죄 상한 + 제2범죄 상한의 1/2 + 제3범죄 상한의 1/3)

- 3. 선고형의 결정: 징역 1년, 집행유예 3년
-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,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.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.

다만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,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,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.

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가정환경, 범행의 동기와 경위, 범행의 수단과 결과,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신정민